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완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052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완화(제50조)	2
[참고] 형벌규정 완화 취지 일괄개정 대상 법률	7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5. 5. 15.

다. 회 부 일 : 2025. 5.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가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행정상 명령·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완화(제50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상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2.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나. 점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거점지구’는 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 상업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됨.¹⁾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지식산업센터 등은 현행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승인을 받은 입주기관들은 승인 받은 사항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²⁾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을 마련하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점 지구의 핵심공간인 기초연구구역과 산업구역에 입주할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었음.

현행법 제50조제3항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외국인전용 약국’은 현행법 제정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2011년 현행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임.³⁾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외국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고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으로 보되,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을 약국 내외부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외국인전용 약국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경미한 위반행위로 보아 징역 또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처럼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14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임([참고] 형벌 규정 완화 취지 일괄개정 대상 법률).

다만, 개정 대상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 개정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업구역에서 79건의 입주승인 및 103건의 변경승인이 있었으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사례 및 이로 인한 처벌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5년에도 8월까지 처벌 사례가 전무함.

외국인전용 약국 또한 2025년 8월 현재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개설된 바가 없어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민간에 대한 형벌규정 완화 취지는 인정되나, 개정 대상인 형벌규정이 도입 이후 한 차례도 활용된 바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7

참고

형벌 규정 완화 취지 일괄개정 대상 법률

연번	법률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제50조제3항) ·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50조제4항)	과기부
2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대상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70조제5항)	금융위
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25조제1호 및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조정함 (제27조제1항제8호)	외교부
4	대기환경보전법	· 저공해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91조의2제1호)	환경부
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댐건설 관련 조사·측량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댐건설사업자로서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댐건설 등을 위해 장애물을 변경·제거한 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51조)	환경부

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로서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반출·입, 폐사 등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30조제3항제2호)	환경부
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대여·대여 알선하는 등 위반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양벌을 면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업무에 관한 것으로 명확하게 함 (제24조제1호부터 제7호, 제25조)	산림청
8	소금산업 진흥법	·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에 대한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제63조제2호) · 허가를 받지 않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제63조제1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함 (제63조제2호)	해수부
9	약사법	· 약국·의료기관개설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96조제6호)	식약처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제94조제2호)	문화부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신탁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하는 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제446조제18호)	금융위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제36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제2호)	농림부
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재생의료기관의 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60조제2호)	식약처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계인 등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31조제2호)	소방청

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법제처)